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70
--------	--------	----

제출년월일 : 1995. 1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사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1995.2.28. 대통령령 제14,543호)으로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과장 직급을 도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국내 하부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을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안 제4조).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법률 제4,951호, 1995. 7. 26.)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현행)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